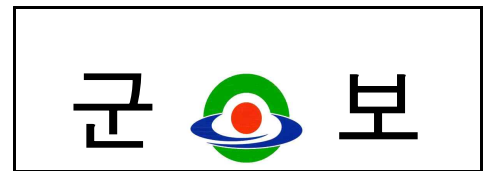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2호 2022. 12. 26.(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4호)
-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5호)
-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6호)

고 시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13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4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영 제7조의2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영 제52조”를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영 제52조”로, “공개하는 공유재산”을 “공개하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을 “사용허가대장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항”을 “제1호 및 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제26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제2항 단서 중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을 “따른”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에 의한”을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른”으로 한다.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고 한다) 별표 3을 따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중 “당해사용·수익허가”를 “당해 사용허가”로 한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자에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0.)에 따라 신설된 조문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4(2022. 2. 24.)호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위임 미반영 사항 정비 및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등 정비(안 제5조)
- 나.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개 의무 명시(안 제7조)
-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2조)
- 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 가능한 사항 정비(안 제19조의 2, 제24조의2)
- 마. 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3)
-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의2)
- 사.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정비(안 제28조)
- 아.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정비(안 제31조)
- 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 정비(안 제32조)
- 차.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38조)
- 카.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40조)
- 타.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조문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2조 및 제32조의 2)
- 파. 상위법령 규정 용어 불부합 사항 정비(안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5호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전통민속문화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품물경연대회 출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달집태우기 행사, 연날리기대회 등 전통민속놀이에 관한 사항
	국악(판소리) 대제전 및 경창대회 등에 관한 사항
	향교 및 서원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정체성 연구사업	윤리선양 실천사업 및 향토사랑사업에 관한 사항
	내고장 뿌리찾기사업에 관한 사항
음악·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백일장, 시낭송대회, 문학지, 한시집, 화보집 등 출간에 관한 사항
	그림대회, 서예대회, 전시회 등 미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노래자랑, 음악회, 합창단, 오페라, 뮤지컬, 연극(창극) 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관(갤러리) 전시회 및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진 공모전, 촬영대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무용 발표회,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아리랑제 등 각종 지역 예술제 개최에 관한 사항
	다례축제, 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 관촉행사 등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운영
문화·예술행사 국내외 교류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관련 각종 교육·회의·자문 등 참석자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서예, 국악 등 전통문화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활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관광 진흥 육성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환경정비 및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성탄트리 점 등식,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공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예천관광활성화와 단체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항목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운영 항목 추가(안 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국내·외 관광판촉 행사 등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판촉 행사 등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 업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시티투어 운영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운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6호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산축하금 지원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아당 1회 100만원 지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검사 및 접종비 지원
4. 산모·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5.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용품 및 기념품 지원
6. 출산용품대여
7. 그 밖에 출산·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등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지방자치 단체 서비스	[] 출산장려금	()의 자녀 중 (☐ 출생 ☐ 전입 ☐ 입양) 일자(. .)이름()
	[] 출산축하금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아 이상
	[] 출생아 건강보험금	☐ 셋째 자녀 이상 ☐ 다문화 자녀 첫째 이상 (이름 :)
	[] 출산축하용품	☐ 첫째 자녀 이상
	[] 식품꾸러미	☐ 셋째 자녀 이상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국외출생 여부 : [] 에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2.복수국적 여부 : [] 에 [] 아니오
	해산급여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이 용 · 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B[접수  
읍·면·동]
    B --> C[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C --> D[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four-step application process for the 2024 National Public Service Commission Exam. It begins with 'Application Form Filing' (신청서 작성) by the applicant (신청인) or proxy (대리신청인). This is followed by 'Receipt' (접수) at the local level (읍·면·동). The third step is 'Registration, Review, and Qualification Confirmation' (등록, 심사, 자격 확인) at various agencies including city/county/district offices, health center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city gas companies, and heating companies. The final step is 'Notification of Selection and Service Provision'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at the same agencies.

◇개정이유

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제4조)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원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2. 26.

예 천 군 수

-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별도 비치(예천군청 재무과)
- ☐ 열람장소 : 예천군청 재무과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